

조립보험

CHUBB®



기계장치, 탱크, 철탑 등 각종 설비 공사에서부터 석유화학,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등에 발생한 물적손해와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손해를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으로, 발주자 및 시공자 등 조립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종합적이고도 포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주요 보상하는 손해

-물적손해

- 조립작업의 결함
-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 잘못 또는 악의
- 화재 및 벼락, 폭발 또는 파열
- 누전, 합선 등 각종 전기적 사고
- 도난
-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 폭풍우, 흥수,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 현상
-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 기타 약관 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은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 조립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물적손해

-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벌, 몰수로 인한 손해
- 핵반응, 방사선 또는 방사능 오염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나 그 대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 별과금, 공사지연손해, 성능부족, 계약손실 등을 포함한 모든 간접손해
-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설계, 주조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단, 특약으로 담보 가능
-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 공사용 기계기구 및 중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 일반도로 전용허가를 가진 차량, 수상수송 선박, 항공기의 손실 및 손해
- 서류, 도면, 계산서 청구서, 통화, 인지, 증거 서류, 화폐, 유가증권 및 수표의 분실 또는 손해
- 재고 조사할 때에 발견된 손해

-제3자 배상책임손해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의 상해 및 질병
-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들에게 속하거나, 보관, 보호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손해
-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 귀속되지 않는 배상책임으로서 합의에 의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주요 특별약관

- 제작자결합담보 특별약관
-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가입대상

공사 목적물

- 조립물건: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장치류
- 산업용 공장: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자동차부품공장 등 제조공장
- 건설공사보험과 영역구분: 공사내역 중 조립공사의 비중이 50%이상인 경우 조립 보험

의무가입대상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5조에서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정한 공사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공사개요서
-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내역서
- 공사 일정표
- 배치도 및 설계도
(단면도, 평면도, 굴착도 등)
- 주변현황도(주변 건물과의 이격거리 포함)
- 지질조사보고서
- 기타 요청 자료

처브그룹 소개

처브그룹은 세계 보험업계를 선도하는 보험사입니다.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재보험 및 생명보험을 다양한 기업 및 개인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이팅 중심 기업인 처브그룹은 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원칙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평가 및 관리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처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보험 전문지식과 장인정신으로 처브그룹은 개인, 가족,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최상의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처브그룹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광범위한 판매 채널, 탁월한 재무 건전성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자랑합니다. 처브그룹은 다국적 기업 및 중소기업 고객을 위한 재물보험, 특종보험, 리스크 관리 서비스, 고액자산보유 고객을 위한 자산보호 목적의 보장성보험, 개인 고객을 위한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주택종합보험 및 특화보험 그리고 단체상해 보험, 단체생명보험 및 재보험 상품을 제공합니다.

미화 1,957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미화 468억 달러의 총 수입 보험료를 달성한 처브그룹의 주요 보험 계열사들은 스탠다드 앤 푸어스사의 기업재무능력 AA 등급을, AM Best의 A++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처브그룹의 모기업인 처브리미티드(Chubb Limited)는 뉴욕증권거래소(NYSE: CB)에 상장되어 있으며,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브그룹은 취리히, 뉴욕, 런던, 파리 및 기타 주요 도시에 사업본부가 있으며, 전 세계 약 34,000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Contact Us

라이나손해보험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처브그룹 컴퍼니
03156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48
라이나타워 14, 15층
대표번호: +82 2 2127 2400
대표팩스: +82 2 6913 8498
www.chubb.com.kr

라이나손해보험은 처브그룹 컴퍼니인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브랜드명으로, 라이나생명과 독립된 계열회사입니다.

재물보험부

Property
O +82 2 2127 2350
E Property.kr@Chubb.com

Chubb. Insured.SM

알아두실 사항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와 의무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에 따른 불이익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사항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시]

1. 보험 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2. 기타 위험 증가하는 경우 예: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등

회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영업일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 험에 정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 소비자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 소비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자는 청약 시 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계약 취소 신청 주소: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리아나타워 14층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 가까운 영업점 위치: (031)56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8

리아나타워 14층

(고객서비스센터)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전화: 02-2127-2400)

보험금 지급 사유와 통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통지가 계율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금의 자급 및 자급제한

보험금의 자급

보험자는 지급 보험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손해를 통지 받고 보상할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상황 하에서 지급할 수 있는 최저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책임이 확정되지 않거나 피보험자의 관리 영역 내에 있는 사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보험금 지급을 중지합니다.

- A. 보험자에게 필요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의 보상 청구권에 의문이 있는 경우
- B.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 또는 형법에 의한 심문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 중인 경우

보험금의 자급 제한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및 일반면책사항(이 일반면책은 증권의 전 부문에 적용됩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적 행위나 고의적 태만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한 사항(해지환급금 안내)

계약의 해지·해지 사항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3.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 사항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외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개월 이경과 하면 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됩니다(상법 제60조 제2항).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려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는 돌려드려지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 시 보험기간 중 남은 미경과 기간에 대해 단기 요율을 적용하여 해지환급금을 돌려드리므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 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시 고객 서비스 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 전화 번호: 1566-5800 (고객 서비스 센터)
인터넷 주소: www.chubb.com.kr
- 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 보호 센터
(www.fss.or.kr) (도번 없이 1332)
우)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계약 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 시 유의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기 거절 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내용(면책 기간, 재작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계약자는 보험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적합성 원칙) 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 제2항, 제19조(설명의무) 제1항 및 제3항, 제20조(불공정 영업 행위금지) 제1항 또는 제21조(부당 권유 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법 제47조(위법 계약의 해지)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감독 규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서 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계약자는 해지 요구서에 위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 해지를 요구하신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따라 기입 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지·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Chubb. Insured.SM